

제 17 장 정부조달

제 17.1 조 일반규정

1.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와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시장에서 양자간 무역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데 대한 양 당사국의 관심을 재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체제의 맥락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국제적 자유화를 증진하는 데 대한 양 당사국의 공유된 관심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협정 제24조제7항에 따른 검토에 있어,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와 그 밖의 적절한 국제포럼에서 조달 사안에 관하여 협력을 계속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정부조달협정상의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리 또는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협정과 이 장의 범위 밖에 있는 양 당사국의 모든 정부조달에 대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의 비구속적 원칙을 적절한 경우에 적용하고자 하는 양 당사국의 희망과 결의를 확인한다.

제 17.2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조달이라 함은 정부 목적을 위한 다음의 조달을 말한다.

가. 1) 부속서 17-가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대로,

그리고

2)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또는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하지 아니하는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조합의 것

나. 구매, 리스, 매입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아니하는 임차 또는 할부구매,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을 포함하여 모든 계약적 수단에 의한 것

다. 부속서 17-가에 규정된 관련 기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가액의 것

라. 조달기관에 의한 것, 그리고

마. 제3항 또는 부속서 17-가상의 적용범위로부터 달리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비계약적 합의 또는 협력협정, 무상교부, 용자, 지분참여, 보증 그리고 재정적 유인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

나. 재무 대리 또는 위탁서비스, 규제되는 금융기관의 청산 및 관리 서비스, 또는 용자, 정부채권, 어음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을 포함한 공적부채의 판매·상환 및 배분과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또는

다. 개발원조를 포함하여 국제지원을 제공하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는 조달

4. 제15.9조(정의)에 정의된 디지털제품의 조달에 관하여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적용대상조달은 디지털제품의 조달을 포함한다. 그리고

나. 제15장(전자상거래)의 어떠한 규정도 디지털제품의 조달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이 장의 규정은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11장(투자),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그리고 제13장(금융서비스)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7.3 조
정부조달협정 규정의 통합

1. 모든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협정의 부록 II 내지 IV, 그리고 정부조달협정의 다음 조항을 준용한다.

제1조제3항	미양허기관에 대한 적용
제2조	계약대상가액 산정
제3조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제4조제1항	원산지 규정
제6조	기술규격
제7조	입찰절차
제8조	공급자 자격심사
제9조	예정된 조달에 대한 참가초청
제10조	선정절차
제11조제4항	납품시한
제12조	입찰에 관한 서류
제13조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
제14조	협상
제15조	제한입찰
제16조제1항	대응구매
제18조	조달기관의 의무에 관한 정보 및 검토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	당사국의 의무에 관한 정보 및 검토
제20조	이의신청절차
제23조	협정에 대한 예외

그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정부조달협정의 조항 및 부록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에 따른 정부조달협정의 통합 목적상,
가. 정부조달협정의 “협정”이라 함은 “장”을 말한다. 다만,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라 함은 “비당사국”을 말하며, 정부조달협정 제3조제2항나호의 “이 협정의 당사자”라 함은 “당사국”을 말한다.
나. 정부조달협정의 “부록 I”이라 함은 “부속서 17-가”를 말한다.

- 다. 정부조달협정의 “부속서 1”이라 함은 “부속서 17-가 제1절”을 말한다.
- 라. 정부조달협정의 “부속서 4”이라 함은 “부속서 17-가 제3절”을 말한다.
- 마. 정부조달협정의 “부속서 5”이라 함은 “부속서 17-가 제4절”을 말한다.
- 바. 정부조달협정 제3조제1항나호의 “그 밖의 당사자”라 함은 “비당사국”을 말한다.
- 사. 정부조달협정의 “다른 당사자”라 함은 “다른 쪽 당사국”을 말한다.
- 아. 정부조달협정의 “상품”이라 함은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 자. 정부조달협정 제8조의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간 또는”은 통합되지 아니한다.

3.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위원회가 개정된 정부조달협정의 문안을 2006년 12월 8일에 잠정적으로 승인하였음을 인정한다. 제24.3조(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에 더하여, 개정된 정부조달협정이 양 당사국에게 발효하는 시점에 양 당사국은 참조 방식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개정된 정부조달협정의 적절한 규정으로 대체하여 신속하게 통합한다.

4. 정부조달협정이 더 개정되거나 다른 협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 후에 제24.2조(개정)에 합치되게 적절한 경우에 이 장을 개정한다.

제 17.4 조 일반원칙

전자적인 수단의 이용

1. 전자적인 수단에 의하여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하는 때에, 조달기관은
 - 가. 정보의 인증 및 암호화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달이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 나. 접수 시간의 설정과 부적절한 접근의 방지를 포함하여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유지한다.

가액산정

2. 정부조달협정 제2조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조달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조달가액을 추정함에 있어, 조달기관은 하나 이상의 공급자에게 계약이 낙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조달에서 규정될 수 있는 할증금, 수수료, 커미션, 이자와 그 밖의 수입 흐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가를 고려하여, 조달 전체 기간에 걸친 조달의 최대 총 추정가액을 포함한다.

제 17.5 조

참가조건

1. 조달기관은 조달의 참가조건을 공급자가 관련 조달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자격과 상업적·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조달기관은
가.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공급자의 영업활동이 있는 경우 그러한 활동뿐만 아니라,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 영역 밖에서의 그 공급자의 영업활동을 기초로 하여 공급자의 재정적 자격과 상업적·기술적 능력을 평가한다.

나.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거나 계약에 낙찰되기 위하여는 그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의 결정을 조달기관이 사전에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명시한 조건에만 기초한다.

3. 조달기관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공급자를 배제할 수 있다.

가. 파산

나. 허위 신고

다. 종전의 하나 또는 복수의 계약상의 실질적인 요건 또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흠결

라. 중대한 범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최종 판결, 그리고
마. 세금 미납

제 17.6 조 공고의 공표

예정된 조달의 공고

1. 각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정부조달협정 제15조에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 조달기관은 정부조달협정 제9조에 따른 예정된 조달의 공고를 적절한 전자적인 매체로 공표한다.

계획된 조달의 공고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향후 조달계획에 관한 공고를 매 회계연도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하도록 권장한다. 그 공고는 조달의 대상과 예정된 조달의 공고에 대한 공표 계획일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협정 부록 II에 기재된 전자적인 매체로 공표되어야 할 것이다.

제 17.7 조 기술 규격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은 정부조달협정 제6조에 따라 아래의 기술 규격을 입안·채택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

- 가. 천연자원의 보전을 증진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 또는
- 나. 상품이 생산되거나 서비스가 수행되는 영역에서, 공급자에게 다음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
 - 1) 작업장에서의 기본적인 원칙 및 권리, 그리고
 - 2) 최저임금, 근로시간, 그리고 직업상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수용 가능한 근로조건

제 17.8 조 기 간

일반사항

1.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입찰참가신청서와 적합한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합리적인 필요에 합치되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가. 조달의 성격 및 복잡성

나. 예상되는 하도급계약의 정도, 그리고

다. 전자적인 방법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장소로부터의 입찰서 전송을 위한 시간

기간의 연장을 포함하여 그러한 기간은 모든 관심있는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에 대하여 공통된다.

마감시한

2. 선택입찰방식을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을 위한 최종일이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의 공표일로부터 원칙적으로 25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가 이러한 기간을 실행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10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게 단축될 수 있다.

3.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기관은 입찰서 제출을 위한 최종일이 다음의 날로부터 40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가.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예정된 조달의 공고가 공표된 날, 또는

나. 선택입찰의 경우에는, 기관이 유자격자 명부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초청될 것이라고 기관이 그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날

4. 조달기관은 다음의 경우 제3항에서 규정된 입찰 기간을 10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게 단축할 수 있다.

가.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의 공표보다 최소 40일, 그러나 12월을 넘지 않을 만큼 미리, 정부조달협정 제9조제7항에 따라 계획된 조달에 관한 공고를 공표하였고, 그러한 계획된 조달에 관한 공고가 다음을 포함하는 경우

- 1) 그 조달내용에 대한 기술
- 2) 입찰서의 제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대략적인 제출 마감일
- 3) 관심있는 공급자가 그 조달에 대한 관심을 조달기관에 표명하여야 할 것이라는 문안
- 4) 조달에 관한 서류를 얻을 수 있는 주소, 그리고
- 5) 예정된 조달의 공고를 위하여 정부조달협정 제9조제6항에 따라 요구되는 이용 가능한 한도의 정보

나. 반복적인 성격의 조달에 대하여 조달기관이 후속 공고가 이 항에 기초한 입찰 기간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정된 조달의 최초 공고에서 명시하는 경우, 또는

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되는 긴급사태가 그러한 기간을 실행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5. 조달기관은 제3항에서 규정된 입찰 기간을 다음의 상황 중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5일씩 단축할 수 있다.

가. 예정된 조달의 공고가 전자적인 수단으로 공표되는 경우

나. 입찰에 관한 모든 서류가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의 공표일로부터 전자적인 수단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다. 입찰서가 조달기관에 의하여 전자적인 수단으로 접수될 수 있는 경우

6. 제4항과 연계하여, 제5항의 원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에 규정된 입찰 기간이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가 공표된 날로부터 10일 미만으로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7. 이 조의 어떠한 다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달기관이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된 입찰 기간을 13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게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그 조달기관은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모두 동시에 전자적인 수단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그 기관이 상업적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입찰서를 전자적인 수단으로 또한 접수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을 10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게 단축할 수 있다.

제 17.9 조 적용범위의 수정 및 정정

1. 당사국은 부속서 17-가의 정정, 부속서 17-가로부터 기관의 철회 또는 부속서 17-가의 그 밖의 수정(이하 이 조에서 일반적으로 “수정”이라 한다)의 제안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수정을 제안하는 당사국(수정 당사국)은 통보에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관의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는 것에 근거한 권리의 행사로서 부속서 17-가로부터 그 기관의 철회를 제안하는 경우, 정부의 그러한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는 증거, 또는

나. 그 밖의 수정제안의 경우, 변경이 이 장에 규정된 상호 합의된 적용 범위에 대하여 미치는 예상결과에 관한 정보

2. 다른 쪽 당사국이 수정제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정제안의 통보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 당사국에게 자국의 이의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의사항의 이유를 포함시킨다.

3. 양 당사국은 협의를 통하여 모든 이의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협의에 있어서, 양 당사국은 그러한 통보 이전에 이 장에서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균형과 상호 합의된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정제안을, 그리고 제1항나호에 따른 통보의 경우, 보상조정 청구를 검토한다.

4. 당사국이 제1항나호에 따른 수정을 제안하는 경우, 수정 당사국은 보상조정이 그 수정 이전에 존재하는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조정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의한다. 그러한 수정은 다른 쪽 당사국이 통보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제안에 대한 이의사항을 수정 당사국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수정제안이 당사국이 기관의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자신의 통제 또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조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보상조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5.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만 수정제안을 채택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된 통보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정제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수정 당사국에게 이의사항을 철회하는 서면통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 17.10 조 정부조달 작업반

-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정부조달 작업반을 설치한다.
- 2. 작업반은, 상호 합의하는 대로 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을 위하여 회합한다.
 - 가. 정보기술에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회부한 정부조달에 관한 문제의 검토, 그리고
 - 나. 각 당사국 내의 정부조달 기회에 관한 정보의 교환

제 17.1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라 함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를 말한다.

건설 · 운영 · 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이라 함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을 말한다.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라 함은 비정부 목적을 위하여 비정부 구매자에게 일반적으로 상업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한 청약의 대상이 되고 비정부 구매자에 의하여 관례적으로 구매되는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조달협정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정부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을 말한다. 그리고

조달기관은 부속서 17-가 제1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